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1

발의연월일: 2025. 5. 21.

발 의 자:조경태·성일종·유용원

정성국 • 박정하 • 김소희

우재준 · 김태호 · 백종헌

서일준 • 고동진 • 김재섭

안상훈 · 정연욱 의원

(14위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원상회복비용"이라 함)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・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・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하는 한편,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·관리에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. 제5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 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 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 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

- 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-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한다.
-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1조(원상회복 등) ① ~ ⑥ 제21조(원상회복 등) ① ~ ⑥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 •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 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 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다만,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 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 게 하여야 한다.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<신 설>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, 지방 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상 <신 설>

<u>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</u> 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제54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공유수 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 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-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 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 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・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-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 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 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 · 징수할 수 있다.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